

▣ '법계법 시행령' 일부 개정 신규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법계위원회 직무) (생략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대중사 및 중사의 특별전형 대상자를 확정 한 후</u> 이를 총무원에 통보하고, 총무원은 중앙중회 등의 및 원로회의 <u>심의를 요청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특별전형을 통한 대중사 및 중사의 법계 품서 시행을 관장한다.</u></p> <p>④ <u>포상법계는 중앙중무기관장의 제의가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, 그 시행을 관장한다.</u></p> <p>⑤ <u>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p>⑥ <u>회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법계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항 신설></p>	<p>제2조 (법계위원회 직무) (현행과 동일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<u>대중사(명사)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 한 후</u> 이를 총무원에 통보하고, 총무원은 중앙중회 등의 및 원로회의 <u>심의·의결을</u>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중사(명덕)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하여 의결 한 후</u> 이를 총무원에 통보한다.</p> <p>④ 특별전형을 통한 <u>대중사(명사) 및 중사(명덕)의 법계품서 시행을 관장한다.</u></p> <p>⑤ <u>포상법계는 중앙중무기관장의 제의가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, 그 시행을 관장한다.</u></p> <p>⑥ <u>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p>⑦ <u>회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법계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 (의제실무위원회 구성) <u>법계위원회는 법 제5조에 의거 법계위원회 결의로 법계시행에 필요한 의제부분을 전담할 시행위원으로 구성된 의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① <u>의제실무위원회는 위원장·총무원 총무국장, 기획국장, 문화국장 및 계율과 청구에 밝은 비구·비구니와 의제 전문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	<p>제4조 (의제실무위원회 구성) ① <u>법계위원회는 법계에 따른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 위해 의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의제실무위원회는 위원장·총무원 총무국장, 기획국장, 문화국장 및 계율과 청구에 밝은 비구·비구니와 의제 전문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

<항 신설> ② 의제실무위원회는 법계위원회의 지휘하에 법의·회장·의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
<항 신설>

③ 의제실무위원(당연직 제외)은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법계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중에 한 한다.

④ 의제실무위원회는 법계위원회의 지휘하에 법의·회장·의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.

제7조 (법계별 가사)

법 계	가사
대중사	25조
중 사	21조
중 덕	19조
대 덕	15조
중 덕	9조
견 덕	7조
명 사	25조
명 덕	21조
현 덕	19조
혜 덕	15조
정 덕	9조
계 덕	7조

제7조 (법계별 가사) 법계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계별 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구 법계

대중사	25조
중 사	21조
중 덕	19조
대 덕	15조
중 덕	13조
견 덕	9조

2. 비구니 법계

명 사	25조
명 덕	21조
현 덕	19조
혜 덕	15조
정 덕	13조
계 덕	9조

<신설>

부칙(2024. 00. 00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의제실무위원은 이 영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2026년 11월 11일까지로 한다.